

즉시 항고

사건: 2006초기3130 이강원 기피 신청

항고인: 김명호,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415

위 이강원 법관 기피 신청기각 결정에(이하 ‘이사건’, 2006. 10. 20. 통지 수령) 대하여,

형사소송법 제23조 (기피신청기각과 즉시항고)

①기피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.

따라, 다음과 같은 사유로 즉시항고를 제기합니다.

즉시항고 취지

“2006. 10. 17 자 이강원 법관 기피 기각 결정을 취소한다.”

라는 결정을 구합니다.

즉시항고 사유

1. 즉시항고인은, 이강원 법관에 대한 기피 사유로서

- 가. 본안사건은(2006초기3061) 명백한 ‘신청’ 사건 임에도 불구하고, ‘외국인’, ‘환경’ 전문 재판부로 지정된, 서울중앙지법 항소 1부로 배정된 점.
- 나. 항소 1부 재판장 이강원은 성균관 대학 출신이고, 이 사건의 본안 사건은, 판사들을 비난했다는 혐의의 명예훼손 사건입니다. 판사들을 비난했다는 사건은, 피고인의 교수지위확인 사건과(서울중앙지법 2005가합17421, 서울고법 2005나84701) 관련된 것으로, 그 피의 판사들 중 성대 출신 판사 이혁우가 포함되었을 뿐만 아니라, 교수지위확인사건의 피고가 성균관 대학이라는 점.

의 정당한 사유들을 제시하였는 바, 이강원 판사는 그 사유에 대하여 반론을 제시하지도 못하였습니다.

2. 명백하다는 소송지연 사유도 제시하지 못한 채

형사소송법 제20조 (기피신청기각과 처리)

- ①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거나 제 19조의 규정에 위배된 때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다.

만을 인용하며 내린 기각 결정은, 법 무시하는 이강원 판사의 눈가리고 아웅하는 결정입니다.

- 3. 뿐만 아니라, 본안사건에서(2006초기3061) 이강원 판사는 항고인의 조귀장 법관기피사유를 변조하고 그 변조된 사유에 대하여 판단함으로써,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.(입증자료1)
이러한 사실은 앞의 두 가지 사실과 함께, 이강원 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것입니다.

입증자료

- 1. 조귀장 법관기피사유에 대한 항고인과 이강원 판사의 허위 날조 주장 비교표

2006년 10월 21일

위 항고인 김명호 (날인 또는 서명)

서울중앙지법 항소 1부 귀중

기피사유에 대한 항고인과 이강원 판사의 허위 주장 비교표

항고인(신청인)의 기피 사유	이강원 판사의 허위 날조 사유
<p>1. 조귀장 판사가 위반한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</p> <p><u>형사소송규칙 제132조(증거신청의 방식)</u></p> <p>①검사,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그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.</p> <p><u>형사소송규칙 제 132조의 2(수사기록의 일부에 대한 증거신청 방식)</u></p> <p>①형사소송법 법 제311조 내지 제315조 또는 제 3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로 할 수 있는 서류나 물건이 수사기록의 일부인 때에는 검사는 이를 특정하여 개별적으로 제출함으로써 그 조사를 신청하여야 한다. 수사기록의 일부인 서류나 물건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나 피고인의 정상에 관한 증거로 제출할 경우 또는 법 제2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기일 전에 서류나 물건을 제출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.</p> <p><u>법원실무제요 제 5장 공판절차(검사에 의한 증거신청 방식의 특례)</u></p> <p>“검사로서는 그 수사기록 중 어느 서류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인지를 명백히 함과 동시에 그 각 서류의 입증취지도 분명히 해야 함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고(형사소송규칙 제132조의2 제1항)”</p> <p><u>형사소송규칙 제133조 (증거신청의 순서)</u></p> <p>“증거신청은 검사가 먼저 이를 한 후 다음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를 한다.”</p> <p>2. 위 법 조항과 규칙에 의하여, 검사측에 자료제출 및 그의 입증취지에 대한 제출 명령을 하지 않음으로써, 재판지연</p>	<p>검사의 증거서류의 조사신청에 대하여 검사로 하여금 그 서류를 피고인에게 제시하게 하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그 서류의 증거능력 유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하였으므로,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주장.</p>